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3526
----------	------

2026년 3월 6일
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

나. 제안일자 : 2024년 5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라. 상정일자

○ 제334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6년 3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실장 여장권)

가. 제안이유

○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25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확대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11. 13. ~ 12. 3.)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현금 또는 현물로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최대 자본 한도인 “수권자본금”¹⁾을 현재 ‘25조원’에서 ‘27조원’으로 2조원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그간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현금 및 현물출자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운영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²⁾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권 조정은 양공사 통합³⁾ 이후 2번째로⁴⁾ 양공사 통합 이전에는 서울메트로가 1981년 이후 7차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994년 설립 이후 3차례 수권자본금을 상향 조정한 바 있음

1) 수권자본 :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를 뜻한다. (중략) 따라서 회사의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와 동시에 그 최고한도액까지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액을 수권자본금이라 하고 이 제도를 수권자본제도라고 한다. [참조조문] 상법 289조 ①항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 용어사전)

※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략)

2) **2010년~2025년 서울교통공사 납입자본금 현황 : [별첨1]**

3) 2017년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를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4) 공사 통합 후 수권자본금 첫 번째 변경 : 수권자본금 21조 5,000억원 → 25조원으로 확대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94호, '20.10.16.제안, '20.12.22. 의결)

※ 서울교통공사(통합 이전) 수권자본금 변경 내역⁵⁾

(단위 : 억원)

연도	'81	'82	'83	'92	'97	'00	'03	'10	'17	'21
서울 메트로	500	3,800	15,000	24,000	30,000	45,000	75,000	95,000	215,000 (양광사 통합상)	250,000
	설립	1~4호선 현물출자 운영지원 등			건설 부채 상환, 사업 출자 등			3호선 연장인수		
연도	'94		'98		'02		'06			
서울도시 철도공사	30,000		40,000		90,000		120,000			
	설립		건설부채 상환 등		6, 7호선 현물출자 등		건설 부채 상환 등			

○ 서울교통공사의 납입자본금⁶⁾은 2025년 말 기준 24조 5,763억 원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권자본금의 약 98% 수준 까지 도달하였으며⁷⁾ 2026년 노후시설 재투자⁸⁾뿐만 아니라 5, 8호선 연장사업에 따른 출자 등이 예정되어 있어 올해 현행 수권자본금 2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진 예정 사업들에 대한 원활한 재정지원을 위해 수권자본금을 25조원에서 27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

5) 검토보고서,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04호, 2010.3.1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18호, 2006.2.23.)

검토보고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94호, 2020.12.22.)

6) 납입자본금: 공기업 설립·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본금 출자(현금·현물)를 의미함. 즉, 수권자본금 한도 내에서 서울시가 현물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것임

7)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도시철도과-13465호, 2025.10.30.)

수권자본금(자본금 한도 (A))	'25년 말 납입자본금 (B)	잔여 한도(출자가가능액) (A-B)
250,000억원	244,375억원	5,625억원

8) 서울교통공사 출자금 2026년 예산 : [별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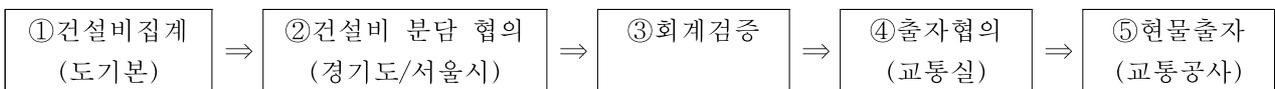
※ 5, 8호선 연장사업에 따른 출자 계획

구 분	개통일자	출자규모	진행현황
5호선 연장(하남선) 강일역	2021.3.27.	2,500억원	- 경기도와 건설비 분담 협의9) ※ 2026년 하반기 회계검증 예정
8호선 연장(별내선) 암사역사공원역	2024.8.10.	1,500억원	-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건설비 집계 중10)

- 다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수권자본금이 상향될 경우 서울시의 추가 출자 확대를 통해 노후시설 재투자 등으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안전성 및 도시철도 이용편의가 개선될 수 있으나 부채비율¹¹⁾ 하락에 따른 공사채 발행 한도(순자산액의 2배)¹²⁾가 늘어나 공사채 추가 발행¹³⁾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무분별한 차입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환능력 및 중장기 재무계획¹⁴⁾ 등을 고려한 신중한 재정 관리가 요구됨

9) 경기도와의 건설비 분담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출자과정



11)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100

12) 공사채 발행 한도 기준(총부채/순자산): 서울교통공사 부채비율 130% 이내

13) 2020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행정안전부)

○ 법령상 발행한도(시행령 제62조제2항)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 순자산액의 4배 이내 - 기타사업 : 순자산액의 2배 이내

○ 순자산액 : 승인신청일 기준,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을 의미

14) 「지방공기업법」 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2025.9. 서울교통공사)

- 한편,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수권자본금이 21조 5,000억원에서 3조 5,000억원 증액 후 25조원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000억원대 이상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부채 규모와 자본 잠식률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서울교통공사 재정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자산	부채	자본	당기순손실	부채비율(%) (부채/자본)	자본금	자본잠식율(%)
2020	133,403	62,535	70,868	△11,137	88.2	209,990	66.3
2021	150,840	66,072	84,768	△9,644	77.9	222,767	61.9
2022	154,227	65,570	88,657	△6,420	74.0	232,740	61.9
2023	156,676	68,322	88,354	△5,173	77.3	238,281	62.9
2024	158,036	73,473	84,563	△7,241	86.9	241,734	65.0
2025 (잠정)	157,852	77,561	80,291	△8,255	96.6	245,763	67.3

* 자본잠식율 : $(1 - (\text{자본}/\text{자본금})) \times 100$

- 서울시의회는 그간 서울교통공사의 과도한 부채가 자본 잠식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¹⁵⁾한 바 있고,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매각, 운임 인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 비용(POS) 및 노후 시설물 개선 비용 증가 등 만성적인 적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 보여짐

15)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신규 발행 최소화해야”(2024.2.28.,)

별첨 1

2010년~2025년 서울교통공사 납입자본금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전년도말	납입자본금			당년도말	주요 내역
		계	현금	현물		
계		67,406	62,775	4,631		
2010년	178,357	3,753	1,628	2,125	182,110	3호선 연장 인수, 부채 상환
2011년	182,110	1,146	1,146		183,256	부채 상환, 시책 사업
2012년	183,256	1,115	1,115		184,371	부채 상환, 노후시설 개량
2013년	184,371	887	887		185,258	부채 상환, 노후시설 개량
2014년	185,258	4,070	4,070		189,328	부채 상환, 노후시설 개량
2015년	189,328	943	943		190,271	부채 상환, 노후시설 개량
2016년	190,271	3,478	972	2,506	193,749	시당부지 출자, 노후시설 개량
2017년	193,749	1,502	1,502		195,251	노후시설 개량
2018년	195,251	1,323	1,323		196,574	노후시설 개량
2019년	196,574	10,177	10,177		206,751	공채 채무이관, 노후시설 개량
2020년	206,751	3,239	3,239		209,990	노후시설 개량
2021년	209,990	12,777	12,777		222,767	공채 채무이관, 노후시설 개량
2022년	222,767	9,973	9,973		232,740	공채 채무이관, 노후시설 개량
2023년	232,740	5,541	5,541		238,281	부채상환, 노후시설 개량 노후 전동차 교체
2024년	238,281	3,453	3,453		241,734	노후시설 개량, 노후 전동차 교체
2025년	241,734	4,029	4,029		245,763	부채상환, 노후시설 개량 노후 전동차 교체

별첨2 **서울교통공사 출자금 예산**

가. 출자금 : 144,884,633천원

나. 산출세부내역

- 도시철도과(12건) : 144,884,633천원

(단위 : 천원)

구분		2026년 본예산	산출근거
출자금 총계		144,884,633	
도 시 철 도 과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0,387,500	- 5개 분야 18개 사업 (전기,통신,궤도,신호,구조물)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36,591,000	- 4개 분야 10개 사업 (전기,신호,통신,궤도)
	서울교통공사 노후전동차 교체	28,019,883	- 1~8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7차9차 사업분
	4·7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	4,545,000	- 4호선 증차(3,413백만원) - 7호선 증차(1,132백만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공기질 개선	6,166,250	- 승강장 강제배기 장치 설치 등 3개 사업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25,122,000	- 길동역 등 21개역 E/S설치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화장실 확충	2,473,000	- 여자화장실 변기 확충(6개소) - 양변기 교체(386개소)
	홍대입구역(2호선) 출입구 신설	700,000	- 홍대입구역 출입구 설계완료에 따른 공사 추진
	지하철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	3,300,000	- 학동역 등 10개역 캐노피 설치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4,000,000	- 청담역 환기구 정비 등 9개 사업
	지하철 시설물 안전관리	890,000	- 1~4호선 스마트조명제어 시스템 설치 등 2개 사업
	전동차 기능 개선	2,690,000	- 3호선 전동차 대용량 콘덴서 교체 등 4개 사업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26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도시철도 노후시설 안전투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을 현행 25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확대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11. 13. ~ 12. 3.)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교통실 도시철도과 이수용 (☎ 2133-4402)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5조원”을 “27조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7호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u>25조원</u>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의2(의회에 대한 보고) 공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7. <u>서울시</u> 및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p> <p>8.·9. (생략)</p>	<p>제4조(자본금) ① ----- - <u>27조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2(의회에 대한 보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시</u> ----- -----</p> <p>8.·9. (현행과 같음)</p>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이수용 (02-2133-4402)